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17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중 소 기 업 청 장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된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 후속조치 이행과 공공기관의 요구 및 민원으로 제기된 ‘시행세칙’ 개정 수요를 검토 반영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일부 오류사항을 정정

### 2.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확대

-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융·복합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2)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 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33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5) 시행세칙 제3조4호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특허권자에 한함)’ 조항에서 특허권자로 제한함에 따라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출원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통상실시권자 제외’로 수정하여 수혜대상자 확대

#### 나. 성능인증 대상 제품 추가

- 1)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산업융합품목’, ‘개발선정품’,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을 [별표1]에 추가
- 2) 단순 누락분 삽입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를 [별표1]에 추가

### 3. 의견제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  
(전화 : 042-481-4569, Fax : 042-472-7932)